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26
----------	------

2023년 9월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김형재 의원(찬성자 44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형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역축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자치구 지역축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3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제66조의 11제1항 및 제3항¹⁾에 따라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지역축제 중

- ①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 ②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 ③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시장에게 현장 확인을 통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토록 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하

- 1)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p><u>여야 한다.</u></p> <p><u>1.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u></p> <p><u>2.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u></p> <p><u>3.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u></p>
--	---

- 먼저, 법 제66조의11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2)에 따른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 같은 조 제4항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수립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② ~ ⑥ (생략)

- 더불어, 법 제66조의11제2항³⁾에 따라 시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라 자치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는 해당 구청장 소관이나,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에 대해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라 자치구 안전관리 이행실태의 지도·점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 본 개정안 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감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규모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해 해당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치구에서 행해지는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보다 두텁게 강화하려는 취지는 인과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참고로, ‘23년 상반기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지역축제는 총 18건으로 이 중 1일 이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는 “2023 BTS 10주년 FESATA” 등 총 2건이었으며,

[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서울시 관내 지역축제 현황('23년 상반기)

연번	축 제 명	1일 이상 운집인원(명)	총 참여인원(명)	비고
----	-------	------------------	-----------	----

3)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략)

1	2023 서울하프마라톤 대회(동아일보사)	4,000	4,000	
2	서울둘레길	120	150	
3	2023년 부활절(이스터) 퍼레이드	2,000	10,000	
4	제14회 금융투자인 마라톤 대회	4,000	4,000	
5	행복한가게마라톤대회	2,500	2,500	
6	여명국제마라톤	900	900	
7	202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450	18,400	
8	벚꽃마라톤	3,700	3,700	
9	루이비통 패션쇼	1,780	1,780	
10	2023 서울하프마라톤 대회(조선일보사)	4,000	4,000	
11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10,000	1,000,000	
12	2023 연등회	100,000	100,000	
13	제12회 양천마라톤	4,000	4,000	
14	제13회 서울 자전거 대행진	6,000	6,000	
15	2023 BTS 10주년 FESTA	150,000	500,000	
16	2023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	45,000	
17	'23 한강 르네상스 페스티벌 아쿠아슬론 대회	1,000	1,000	
18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1,000	1,000	

- '23년 상반기 1일 예상 운집인원 5만명 이상 또는 축제 기간 중 총 운집인원 100만 명 이상인 경우는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등 총 6건이었음.

[표] 1일 예상 운집인원 5만 명 이상 또는 축제 기간 중 총 운집인원 100만 명 이상인 축제현황('23년 상반기)

연번	축제명	1일 예상 운집인원(명)	총 참여인원(명)	비고
1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10,000	1,000,000	
2	서울장미축제	20,000	2,000,000	
3	2023 연등회	100,000	100,000	
4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100,000	5,000,000	
5	2023 BTS 10주년 FESTA	150,000	500,000	
6	2023 송파구 벚꽃축제	200,000	1,000,000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2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종배, 이종태,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44명)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역축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구 지역축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2.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3.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data-bbox="619 488 791 528"><신 설></p>	<p data-bbox="820 488 1453 931">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p> <ol data-bbox="855 954 1453 1397"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55 954 1453 1133">1.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li data-bbox="855 1155 1453 1267">2.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li data-bbox="855 1290 1453 1397">3.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